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일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53
----------	------

발의연월일 : 2019. 1. .

발의의원 : 도일용 의원, 김은영 의원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결정되어 통보된 달성군의회의원 의정비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표 2 월정수당 지급액 변경

구 분	지 급 액
2019년	월 1,882,370원
2020년	2019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19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한 금액
2021년	2020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20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한 금액
2022년	2021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21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한 금액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참 고 사 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제3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지 급 액
2019년도	월 1,882,370원
2020년도	2019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19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한 금액
2021년도	2020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20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한 금액
2022년도	2021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21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한 금액

□ 지방자치법 제33조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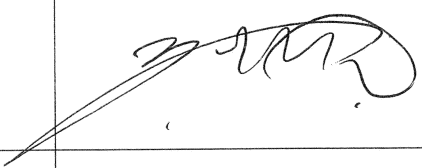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의정활동비: 별표 4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34조에서 "심의회"라 한다)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2. 여비: 별표 5에 따른 여비 지급범위에서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3. 월정수당: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하되,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서 명 날 인 서

의 원 명	서 명	날 인
도 일 용	조 권 동	
김 은 영	김 은 영	